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직인생략

150-7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금산빌딩 907호) /전화: 761-4205 /팩스*782-6659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부서장 : 김경옥 과장 담당자 : 윤현진 e-mail: hjyoon@kcia.or.kr

대한장협 : 제7-258호

시행일자 : 2013.7.18

수신자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대표이사

참 조

제 목 : 2013년 상반기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251호(2013.7.17)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호) 제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3년 상반기에 수집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2013.7.31(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성 정보가 없을 경우에도 “없음”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보고시 행정처분이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1부.

2) 「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